
문서번호 : 17-08-센터-02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010-5058-5651)
(담당: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010-8166-0811)
제 목 : [보도자료]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7. 8. 30.(수)
전송매수 : 총 11매

[보도자료]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위 영화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원에서 살고 있던 故최인기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를 전혀 할 수 없는 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로부터 취업활동을 강요받았고, 수급을 받기위해 어쩔 수없이 아픈 몸으로 무리하여 근로를 하다 2014. 8. 28. 사망하였습니다.
3. 故최인기님이 무리한 근로를 하다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수원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故최인기님에 대해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근로능력이 있다는 위법한 근로능력평가를 하였습니다. 수원시는 공단의 위법한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故최인기님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하고, 故최인기님을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였으며,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故최인기님께 부적절한 근로를 강제하였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

이 있습니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故최인기님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故최인기님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와 함께 수원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故최인기씨의 사망 3주기인 2017. 8. 28.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6. 복지수급자의 사망에 대한 첫 국가배상 소송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1 :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 故최인기님의 사망경위
- 첨부자료3 : 국가배상 소송 소장 개요
- 첨부자료4 : 기자회견문

2017년 8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p>[기자회견]</p> <p>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p> <p>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p>
<p>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p> <p>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p> <p>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p>
<p>기자회견 순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p> <p>발언: 유가족 곽혜숙님</p> <p>발언: 故최인기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p> <p>발언: 故최인기님 사망경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p> <p>발언: 근로능력평가 - 취업강요의 문제와 현황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p> <p>기자회견문</p>

(첨부자료2) 故최인기님의 사망 경위



- 최인기님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심장 대동맥류와 기형으로 인한 인공혈관 치환 수술을 받음.
-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됨.
- 일반수급자격을 유지했으나 2013년 11월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2014년 1월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음.
- 몸이 안 좋고 일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호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음.
-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4년 1월부터 교육훈련 받음.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급여를 빼앗긴다는 말에 2월 말 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함.
- 일을 하며 감기증상과 발열, 부종이 지속되었음. 그러

던 5월, 일하던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

- 6월 다시 발작해 응급실에 입원. 이식 받은 혈관을 비롯해 복부 전체에 감염이 퍼져있음을 확인.
- 6월 입원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코마상태에 접어 듦. 8월 28일 사망.

<문제점>

- 故최인기님은 본인의 신체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취업강요 정책에 의해 목숨을 빼앗김. 여기에는 1)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와 2)취업강요 정책의 문제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을 받고 있음.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 도입되어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었음. 연금공단의 판정 결과는 보장기관(지자체)이 최종적으로 수급자들에게 결정통보 함.
- 근로능력평가는 시행 초기부터 빈곤층에 대한 낙인적 묘사(계절감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 화를 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한다 등)로 인권 침해적이라는 점, 취업가능성 및 개인상황을 배제하고 몇 가지 척도에 대한 조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연금공단이 판단업무가 위탁된 뒤 근로능력 있음 평가는 3배 상승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음. 게다가 이 과정에서 수급자는 적절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음.
- 특히 2014년 4월부터 전국화 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은 수급자 개인의 상황과 무관히 시장취업을 우선 장려하도록 되어 있음. 즉,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취업할 것을 주문받는 상황인데, 수급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국가배상 소송 소장 개요

1. 고 최인기님의 경우 문제된 ‘근로능력 있음’ 평가와 ‘조건부 수급자’ 선정의 의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보장기관(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시 시행 중이었던 보건복지부 지침(「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은 조건을 불이행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추정소득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부과되는 추정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수급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보장기관이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간주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삭감 또는 중지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를 포함한 수급자격 자체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에 대해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되,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와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한 사람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근로능력평가와 수원시장의 ‘근로능력 있음’ 판정, 조건부 수급자 선정 및 조건부과의 경위와 문제점과 취업을 통한 자활을 강요받은 고 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고 최인기의 경우 좌석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직장 정기건강검진에서 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2005년과 2008년 부풀어 오른 혈관을 인공혈관으로 교체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수술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어려워진 데다 수술 후에도 심혈관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결국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게 되었고, 보장기관인 수원시에 의해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수년간 고 최인기의 건강상태는 더 이상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된 후¹⁾인 2013년 말 고 최인기는 갑자기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고 최인기는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게 된 이유와 근거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보장기관인 수원시로부터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삭감 또는 중지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013. 10.경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제출된, 분당서울대병원 전문의 작성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고 최인기의 증상에 대해 의학적 평가 4단계 또는 적어도 3단계에 해당하는²⁾ “환자는 안정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활동시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요치료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상기 증상에 대하여 항고혈압제 및 이뇨제 복용하면서 외래 경과관찰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고 최인기에 대해 “심혈관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심혈관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심혈관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인 경우”, “고혈압은 있으나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장 양호한 상태인 의학적 평가 1단계로 평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평가결과는 고 최인기의 실제 건강상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으로서 근로능력평가사업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1)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부터 논란 속에 도입되어,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근로능력판정을 해오다, 2012. 12. 1.부터 정부 방침상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장기관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능력평가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2. 12. 1.자 보도참고자료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 위탁 시행’)

2)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51호) 별표 1, 제2장 ‘질환별 평가 기준’, 5 심혈관계질환 평가표에 제시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되기 전까지 수년간 고 최인기에 대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해왔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였으므로 고 최인기의 상태나 생활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수원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와 같은 잘못된 근로능력평가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은 채 고 최인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한 후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하여 일반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통한 자활 대상으로 분류하여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라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2013 자활사업안내」)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을 위한 자활역량평가를 거쳐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자활역량평가 결과 70점(총점 100점) 이상을 받은 집중취업지원 대상자만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으로 배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 노동강도가 낮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등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³⁾. 고 최인기는 자활역량평가결과 5점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보장기관의 자체평가에 따르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사업에 배정된 것입니다.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심혈관질환이 의심 되는 경우 -심혈관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심혈관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인 경우 -고혈압이 있으나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2단계	-심혈관 질환이 진단되었으나 증상은 거의 없는 경우 -고혈압 외의 심혈관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하나, 일상 사회생활이 가능하며, 부작용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약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고혈압이 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
3단계	-심혈관질환이 치료되었으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심질환을 지니고 그 때문에 신체활동이 가벼운 정도로 제한되는 환자. 안정시에는 무증상인데, 보통이상의 신체활동에서는 피로, 동계, 호흡곤란, 또는 험심통이 있어, 운동부하검사와 심초음파로 심장기능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행성 심혈관질환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인 정밀 검사(운동부하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혈관 검사나 방사선 검사)가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 중인 질환으로 안정적 치료가 되지 않고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장이식을 받은 상태
4단계	-심질환을 지니고 그 때문에 신체활동이 고도로 제한되는 환자. 안정시에는 무증상인데 가벼운 일상생활의 신체활동에서 피로, 동계, 호흡곤란, 또는 험심통이 있거나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이 40%이하인 경우 -심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3) 「2013 자활사업안내」 30면

취업을 통한 자활대상으로 분류된 고 최인기는 취업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조건 불이행자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고, 따라서 성실하게 구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직종 중 하나인 좌석버스 운전은 엄두도 낼 수 없고, 60세 넘은 데다 수년간 일을 하지 못한 고 최인기에게 열려 있는 일자리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고 최인기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허락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나 그러한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등의 설명과 배려를 전혀 받지 못했고, 결국 거주지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미화원으로 취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고 최인기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밥 먹기도 싫어할 정도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었고, 부종이 심했습니다. 2014. 5. 17.경 고 최인기는 급기야 다리가 심하게 붓고 고열이 난 상태에서 일을 하다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2014. 6.경 교체된 인공혈관 주위에 감염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감염이 재발하여 개복하고 다시 봉합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고 최인기는 곧 코마에 빠졌으며 2014. 8. 28.경 결국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배치 기준

- 평가 결과 집중취업지원 대상인 사람(70점 이상인 사람)는 고용센터에 의뢰
- 평가 결과 집중취업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70점 미만인 사람)는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 지역봉사, 생업자금 등 복지부(시·군·구) 자활사업에 배치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 준	판정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70점 이상)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희망리본	◇ 취업 욕구가 강한 사람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69점)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69점)
	근로유지형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유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자활근로		

사망하였습니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건부 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조건은, 그 불이행시 모든 급여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을 제시함에 있어 개인의 건강상태, 나이, 근로활동여부 및 기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배려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조건을 제시함에 있어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근로능력평가를 위탁받아 수행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로능력판정, 조건부수급자 선정과 주건부과를 한 수원시장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자의적이며 형식적이고 안일한 평가, 판정과 처분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고 최인기를 무리하게 취업을 하도록 내몰았고, 결국 지병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선정 및 조건부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삭감과 중지를 내세운 협박과 강요가 아닌, 자활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조건부과는 그러한 지원에 대한 협조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다는 끊임없는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자활지원은 자활강요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근로능력평가사업을 위탁받고도 부실하고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를 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활명목으로 무리하게 취업시장 참여를 강요한 보장기관인 수원시에 책임을 묻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고 최인기의 기일인 8월 28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한 남자가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몸이 아파 소득이 끊겨 복지수급을 받길 원했지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아직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치의의 소견도 소용없었고, 담당자를 붙들고 사정해도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것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다. 그리고 2014년 세상을 떠난 최인기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는 복지수급을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인기님은 복지수급권을 완전히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심장 질환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차장 청소부로 취직했다. 취업한지 3개월 만에 감염으로 쓰러졌고, 투병 중 사망했다. 우리는 최인기님 죽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수치심을 대가로 하지 않는 복지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이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근로능력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는 행정 편의 도구일 뿐 실제 취업 가능성과 무관하다. 의학적 평가는 몇 가지 판정 질환에 대한 임의적 단계를 구분할 뿐이며, 활동능력평가의 각 문항은 근로능력과 어떠한 연계도 찾을 수 없다. 개인의 근로능력은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의 경력,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종합된 결과이다. 임의의 수치 합산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는 복지가 필요한 빈곤층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둘째, 조건부 수급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모순된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부과는 사실상 강제노동이 되며, 2014년 시작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

원 사업'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몰고 있다.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1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가난에 빠진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예산 효율화라는 잣대로 좁아진 복지의 경계에서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능력 평가 앞에 무너지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수치심을 대가로 주어지는 복지 앞에 인간은 존엄할 수 없다.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 다니엘 블레이크, 최인기임을 선언하자.

2017년 8월 30일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